

감 사 위 원 회

시 정 요 구

제 목 수영장 안전시설물 관리 미흡

관 계 기 관 평생교육국 등 5개 실·국·본부 및 사업소

내 용

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〔별표 1의2〕‘체육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기준’,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〔별표 4〕‘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’에 따르면,

수영조의 벽면에 거리 및 수심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그런데도, 현장점검시 노원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등 10개소에서는 수영조 거리 미표시, 수심표시 탈색 등으로 이용자들이 수영장 규모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.

〔표 1〕 수영장 안전시설물 관리 미흡 현황

연번	시설명	관리부서(수탁기관)	현 황
1	노원청소년수련관 수영장	청소년정책과 (◁◁◁◁◁◁◁)	수영조 거리 미표시
2	은평청소년수련관 수영장	청소년정책과 (▷▷▷▷▷▷▷)	
3	수서청소년수련관 수영장	청소년정책과 (▲▲▲▲▲▲▲)	
4	서울여성프라자 수영장	여성정책담당관 (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)	
5	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스포츠센터 수영장	장애인자립지원과 (◇◇◇◇)	
6	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	체육정책과 (□□□□□□□□)	
7	고척체육센터 수영장	체육정책과 (▽▽▽▽▽▽▽▽)	
8	한강공원 여의도수영장	한강사업본부 (●●●●)	

연번	시설명	관리부서(수탁기관)	현 황
9	서울곰두리체육센터 수영장	장애인자립지원과 (■■■■■■■■■■■■■■■■■■■■)	수영조 거리 바닥면에 표시
10	한강공원 뚝섬수영장	한강사업본부 (○○○○○)	수영조 수심표시 탈색

조치할 사항

평생교육국장(청소년정책과장), 여성가족정책실장(여성정책담당관), 복지본부장(장애인자립지원과장), 관광체육국장(체육정책과장), 한강사업본부장은, 소관 공공수영장에서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〔별표4〕에 따라 수영조 거리·수심 안내표시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시정요구)